

[서식 예]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

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

신 청 인 O O(주민등록번호) 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길 OO 주소 OO시 OO구 OO길 OO(우편번호) 전화 OOO - OOOO

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

신 청 취 지

- 1.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.
- 2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조정성립일로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1.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○. ○. ○. 혼인하여 슬하에 1남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.



2. 혼인의 파탄

- 가. 신청인은 198○. 초경 ○○에 있는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신청 인과 만나 교제하던 중 신청외 자 □□□을 가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199 ○. ○. ○.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
- 나. 피신청인은 결혼 후 ○○의 구두공장에서 미싱사로 근무를 하다가 혼인신고 후 약 4개월이 지나 ◎◎으로 내려와 같은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였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여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다반사로 하였습니다.
- 다. 그러던 중 199○.경부터는 미싱일을 그만 두고 건축현장 등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자주 외박을 하였고 가끔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술에 취해 들어와 신청인과 신청외 자 □□□에 대한 갖은 폭행과 횡포를 일삼아 신청인과 자 □□□은 공포에 떨면서 살아왔습니다.
- 라. 피신청인은 200○. ○월경부터 가출까지 하였는데 도박을 좋아하여 피고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신청인으로서 전혀 모르는 젊은 남자 2명이 찾아와 전세금을 빼가겠다며 협박을 하다가 피신청인을 잡겠다며 집 근처에서 배회를 하는 등, 20○○. ○. ○.경에는 ◎◎경찰서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가 되어 출석요구가 발송되었으나 도망다니는 관계로 현재 기소중지 된 상태입니다.
- 마. 신청인은 피신청인만을 의지하며 살수 없어 식당일, 파출부 등으로 생활을 해왔으며 현재 공공근로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기에 피신청 인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.
- 3. 이런 피신청인의 외박 및 도박, 신청인에 대한 악의의 유기, 상습적인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. 이는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혼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진단서

혼인관계증명서

가족관계증명서

주민등록등본



1. 갑 제5호증

출석요구서

첨 부 서 류

각 1통

1통

1. 위 입증방법

1. 신청서 부본

1. 납부서 1통

20 ㅇ ㅇ 년 ㅇ 일

위 신청인 ㅇ ㅇ ㅇ (인)

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	
제출부수	신청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기사소송법 제49조, 민법 제840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 이의신청(가사소송법 제60조, 민사조정법 제36조) ·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가사소송법 제60조, 민사조정법 제34조)		
비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이혼사유	1.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		

※(1) 제 출 법 원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 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4.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